

광명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문개정	1984. 2. 21	조례 제 243호
개정	1989. 4. 6	조례 제 534호
	1995. 11. 11	조례 제 904호
	1997. 7. 9	조례 제1042호
	1998. 9. 23	조례 제1088호(행정기구설치조례)
	2003. 11. 18	조례 제1323호(행정기구설치조례)
	2005. 7. 27	조례 제1396호(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6. 12. 15	조례 제1480호(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8. 6. 16	조례 제1588호(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2010. 3. 26	조례 제1714호
	2010. 11. 25	조례 제1731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1. 8. 9	조례 제1786호(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16. 9. 26	조례 제2195호(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6. 12. 20	조례 제2221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7. 3. 12	조례 제2243호(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 7. 9, 2008. 6. 16, 2010. 3. 26, 2016. 9. 26>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구성·운영한다. <개정 2010. 3. 26>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95. 11. 1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인 이상
3. 삭제 <2017. 3. 12>
- ④ 삭제 <2017. 3. 12>
- ⑤ 삭제 <97. 7. 9>

제3조(임기) 위원회는 해당 심의가 종료하는 때까지를 그 존속기간으로, 위원은 해당 기간을 임기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26]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기타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제5조(지명의 조사)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 오류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97. 7. 9>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6조(의견청취) 위원회에서 지명의 심의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사 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동의 소속공무원이나 관련전문가에게 의견청취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7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수당·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7. 7. 9, 2008. 6. 16, 2011. 8. 9>

제7조의2(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1인을 두되, 간사는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98. 9. 23, 2003. 11. 18, 2005. 7. 27, 2006. 12. 15, 2010. 11. 25, 2016. 12. 20, 2017. 3. 12>

[본조신설 97. 7. 9]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9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광명시지명위원회조례(1981년 12월 23일 조례 제107호)는 이 조례 공포와 동시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광명시지명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89. 4.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9.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3. 11.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의한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5. 7.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6. 12. 15 조례 제1480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광명시 지명위원회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중 “문화청소년과장”은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④ 내지 ⑰ 생략

부칙 <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3. 26 조례 제17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만료 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0. 11. 25 조례 제1731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5 까지 생략

④6 광명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④7 부터 ④9 까지 생략

부칙 <2011. 8. 9 조례 제1786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⑤5 까지 생략

⑤6 광명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
영 조례”로 한다.

⑤7 부터 ⑤9 까지 생략

부칙 <2016. 9. 26 조례 제2195호,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20 조례 제2221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광명시 지명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중“문화관광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③ 부터 ⑧ 까지 생략

부칙 <2017. 3. 12 조례 제2243호,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